

개인의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를 위한 정책과 방안*

Policies and Measures for Managing Personal Digital Legacy

김진홍(Kim, Jinhong)** · 이해영(Rieh, Hae-young)***

1. 서론
2. 이론적 배경 및 현황
 - 1)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개념
 - 2)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법과 제도 현황
 - 3)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산업 현황
3.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문제점
 - 1) 법과 제도 및 산업의 문제
 - 2) 개인 디지털 기록관리의 문제
4.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해결방안
 - 1) 법과 플랫폼 정비
 - 2)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 3) 개인의 본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리방안
5. 결론

* 본 연구는 김진홍의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석사(kimjinhong60@gmail.com) (제1저자).

***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전공 교수(hyrieh@mju.ac.kr)(교신저자).

■ 투고일: 2022년 03월 27일 ■ 최종심사일: 2022년 04월 05일 ■ 최종확정일: 2022년 04월 17일.

■ 기록학연구 72, 165-203, 2022, <https://doi.org/10.20923/kjas.2022.72.165>

〈초록〉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물을 생산하며, 개인이 사망한 뒤 남은 디지털 기록물의 양도 늘어났다. 그런데 고인이 남긴 디지털 기록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기록유산과 다르다. 고인의 기록이 고인만의 것이 아닌 경우도 많고, 고인이 생전에 온라인 계정과 디지털 기록 처리 방식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아, 이런 문제는 유족 등에 대한 상속의 문제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 또한 소프트웨어 문제, 특정 플랫폼의 이용약관, 유족에 의한 계정 삭제 등의 사유로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이 방치 또는 삭제될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일상 기록이 쉽게 소실되는 문제로도 이어진다.

개인들이 본인의 디지털 기록 보존에 관심이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몰라 소극적인 방임(benign neglect)을 하고 있음이 몇몇 연구를 통해 드러났다. 이 때문에 개인 디지털 기록과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심을 기울이고, 관련 정책과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와 관련하여 법과 제도, 플랫폼과 산업의 현황 및 정책, 개인 기록관리 현황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법의 제정 및 플랫폼 약관의 명시 필요성, 기록관리기관의 디지털 개인 기록 관리 방안, 개인의 사후 기록에 대한 선제적 관리방안 및 디지털 계정 정보 관련 유언장 작성 방법 등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 사후 개인 디지털 기록 관리, 개인 디지털 유산, 개인 디지털 기록보존, 플랫폼 정책, 법제도

〈Abstract〉

Many people create records in digital space, and the amount of digital records left after individual dies has increased. The digital record left by the deceased is different from the record heritage that has physical substances. In many cases, the records of the deceased not just belong to the deceased, and many deceased did not explicitly disclose

their online accounts and method of dispose of digital records during their lifetime, so this problem may lead to problems of inheritance to the bereaved family. In addition, digital records may be neglected or deleted after a person's death due to software problems, specific platform's terms of use, account deletion by bereaved family, etc. This leads to the problem that daily records, which are important clues to the social aspects at the time, are easily lost.

Several studies have revealed that individuals are interested in preserving their digital records, but do not know how to do it, so they are benign neglect.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personal digital records and personal digital legacy, and to prepare related policies and plans. Accordingly, this study analyzes problems related to the management of digital records after an individual's death, related to laws and systems, the status and policies of platforms and industries, the status of personal record management, etc. Various solutions were suggested, such as a need for enactment for digital personal record management act, platform's explicit policy for individual's post-mortem records, digital records management plan for archival institutions, individual's a preemptive management plan for his/her own records, and a method for writing a will related to digital account information.

Keywords : Personal Digital Legacy Management, Personal Digital Legacy, Personal Digital Records Preservation, Platform Policy, Legal System

1. 서론

현대 사회가 급속히 디지털 시대로 접어들면서, 과거에 대부분의 기록이 종이로 남던 상태에서 벗어나 많은 양의 기록이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고 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1)에 따르면 2020년 7월 현재

만 3세 이상 인구의 91.9%가 ‘인터넷 이용자’이고 그 수는 4,681만 명으로 조사되었다. 스마트폰은 만 6세 이상 인구의 93.1%가 보유하고 있으며, 모바일 인터넷은 만 3세부터 60대까지 각 연령대 상관없이 전부 90% 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70대 이상 이용자도 39.7%가 이용하고 있다. 즉 장소 구분 없이 어디에서든 인터넷을 이용하는 시대이고, 연령대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이 디지털 공간에서 기록물을 생산하고 있다.

그래서 가상의 공간에는 개인의 경험, 지식, 일상 등 다양한 디지털 기록이 생산 및 저장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 기록은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보여주게 되는데, 당시의 사회적 맥락인 정치, 사회, 경제 등의 많은 요소로부터 영향을 받아 ‘당시 사회상’을 알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된다. 과거의 기록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생산과 재생산’ 영역을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고, 일반사람의 일상적인 삶 속에 숨겨진 소외현상을 밝힐 수 없었다(곽건홍, 2011). 이러한 마이너리티에 해당하는 보통 사람들의 기록은 디지털 공간에서 인간과 사회, 그 사이에서 생산되어, 기록의 본질에 더 가까이 접근해 갈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이 모여 사회 전체를 표상하는 기록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록을 공유하고 나눔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디지털 공간의 개인기록은 필연적으로 개인이 죽음에 이르면 다양한 문제를 남기게 된다.

사실 우리는 평소 죽음에 대해 인식하지 않거나, 죽음이라는 것 자체를 불길하고 터부시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죽음을 떠올리지 않으려 한다. 하지만, 삶에는 언제나 죽음이 함께하고 있으며 개인이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는 고인의 소유물들이 남게 된다. 과거 고인이 남긴 물리적 실체가 있는 기록은 가족이나 타인에게 쉽게 수습될 수 있었으나, 사후 디지털 기록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기록유산과는 다르다. 고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세상에 생생하게 남아있거나 곳곳에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디지털 발자국(Digital Footprint)’들을 남긴다.

그렇지만 이러한 개인의 사후 디지털 발자국들은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된 디지털 ‘자아’로 남겨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후 디지털 기록과 고인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의 연결고리가 끊길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다. 소프트웨어 문제, 웹 페이지의 구독기간 만료, 이용자 사망 시에 계정을 삭제하는 특정 플랫폼의 이용약관, 저장기기의 손상, 유족에 의한 계정 삭제 등, 온라인상에서는 소중한 사람이 남겼으나 본인과 함께 추억이 있는 디지털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일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Kasket, 2019/2020).

이러한 기록들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기는 쉽지 않다. 일단 접근성의 문제가 있는데, 웹사이트에는 보통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으며, 본인이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한 본인 이외의 사람이 그것을 알아내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이러한 계정 정보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경우 고인 및 관계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가족 등 제삼자에게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개인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기보다는 미루는 경향, 즉 ‘소극적 방임(benign neglect)’을 하고 있다(Marshall, 2008). 일부 개인들은 디지털 기록관리 및 보존 조치의 필요성을 느끼고는 있으나, 제대로 평가·폐기 등의 관리를 하지 않아 양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관리 의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슬기, 2015). 또한 Sinn, Kim, & Syn(2017)의 일반인 43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참가자는 자신의 디지털 콘텐츠가 역사에 일조한다고 동의하였으며, 이는 참가자들이 디지털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를 원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다는 사실을 끌어내었다. 즉 많은 사람이 개인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 일련의 행동을 하고 있고 관심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를 지니고 있고, 여러 사람이 관심을 가지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기록물 관리

방법이나 관련 제도 등에 관해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제는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개인 디지털 기록, 그리고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에 기반하여 개인의 디지털 기록 및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련된 법률 및 플랫폼과 같은 현행 제도와 관련 산업과 관련하여, 현재 개인 기록관리의 현황과 문제점을 밝히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해 연구 주제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설정하였다. (1)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법률과 플랫폼 등의 현황은 어떠한지? (2)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와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3)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에 대한 현행 제도의 개선을 위해 어떤 방안이 제시될 수 있으며, 개인과 기관이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등이다.

2.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법·제도와 산업 현황

1)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개념

사후 디지털 기록을 지칭하는 용어는 법적으로 규정되거나 따로 약속된 것이 없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명확하게 약속된 정의는 없어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여러 선행 연구에서는 주로 'Digital Legacy' 즉 '디지털 유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었다. Legacy는 사전적인 의미로 누군가 죽은 후에 받는 돈이나 재산¹⁾을 의미하여, 이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 가장 가깝지만 전부를 포함하지 못한다. 이 논문에서는 물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1) Legacy. (2021.08.09.).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ictionary.cambridge.org/us/dictionary/english/legacy>

폐기 등의 관리 방법을 포함한, 개인의 기록이라는 측면을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영어의 Digital Legacy의 번역어인 ‘디지털 유산’이 아니라,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표 1〉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정의

연구자	명칭
김원석(2011), 김경미(2013)	디지털 유산
신동평(2017)	디지털 유산
황용석, 유정석, 김용국(2011)	디지털 유산
Digital Legacy Association(2018)	digital legacy
Maxwell(2020)	digital legacy, digital footprint
Seagraves(2020)	digital legacy
UNESCO(2003)	디지털 유산 (Digital Heritage)
Waagstein(2014)	digital legacy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이란 ‘사망한 사람이 생전(生前)에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며 남긴 디지털 형태의 모든 자료로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동영상 등 시각과 청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정보’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온라인 은행 계좌 등의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s)과 개인 소셜 미디어 프로필, 사진, 비디오, 게임 프로필 및 온라인에서 수행하는 상호 작용에 대한 웹사이트 또는 블로그도 포함된다.

즉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는 물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 웹 서비스에 등록된 사용자 계정 및 구독 플랫폼 그리고 컴퓨터 게임과 같은 디지털 상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 포함된다. 여기서 구매한 모든 콘텐츠는 특정 사용자 계정에 연결 및 귀속되어 있으며 이는 짧게는 며칠에서 길게는 몇십 년 이상으로 오래된 경우도 있고, 이러한 콘텐츠 중 일부는 엄청난 금전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도 한다(오동현, 2017). 또한, 경제적인 가치가 없어 남겨진 자들에게 전달되지 않

거나 손상되더라도 재정적인 손실은 없겠지만, 가족사진 등 정서적, 미완성 출판물 등 학술적, 또는 연락처 목록 등 실용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다(Nagy & Kiszl, 2020).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은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 추적과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용자가 사망하였거나 의식불명, 또는 행방불명과 같이 자기 의사를 표현하거나 실행할 수 없을 때의 관리방안이 매우 까다로운 면이 있다.

2)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법과 제도 현황

사후 디지털 기록과 관련하여, 상속법은 나라마다 그리고 주(州)마다 차이가 있으며, 의미도 불명확하여 공통된 하나의 정의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을 통해서 사자(死者)에 대한 각 국의 입장을 살펴본다.

2010년 중반까지만 하여도 주요 국가의 법률에서는 유기적인 생물학적 육체를 가진 인간에만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고, 죽은 이에게는 적용하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아, 사후 디지털 기록과 관련한 법령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사후 디지털 기록 관리에 관한 법이 생기는 국가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미국의 경우 2015년 32개 주에서 도입이 시작되었고, 프랑스의 경우는 2016년, 중국의 경우 2020년에 상속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 법을 정식으로 통과시켰다. 그 외에 미국 일부 주에서는 아직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고인의 개인 디지털 유언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판례들이 나오면서 사후 디지털 기록과 관련된 논의가 점점 더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국가의 사자(死者) 기록에 대한 현황 및 관련 법의 유무 및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가별 상속 여부

국가	관련법 유무*	주요내용
한국	X	-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볼 수 없지만, 유족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정보는 유족의 개인정보에 해당함(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미국	O	- 2015년 개정된 디지털 자산의 수탁자접근법(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에 사망 후 디지털 유산의 관리 및 승계를 다루는 법적 구속력 포함. - 대부분 주에서 실시(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1).
캐나다	△	-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계획하고 보호하는 것은 개인 스스로에게 달려 있음. 다만, 알버타주의 경우에는 자체 개인 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에 따라 개인에게 부여된 모든 권리 또는 권한이 사망한 개인의 대리인에 의해 행사되도록 허용하고 있음(Hockley et al., 2015). - 대부분 주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중립(Uniform Access To Digital Assets by Fiduciaries Act, 2016).
영국	X	-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2018)은 개인 정보를 식별되거나 식별 가능한 살아있는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로 정의함. - 고인의 개인정보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해당 웹사이트의 서비스 약관에 적용을 받음. - 공공기관 보유의 개인정보만 열람 가능(Information about the Deceased, 2016).
유럽 연합 (EU)	X	- 유럽 연합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칙(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사자의 데이터에까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자에 관한 법은 회원국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함(EU, 2018).
프랑스	O	- 고인의 개인 디지털 유언에 대한 권리 인정하고 상속과 고인의 권리를 인정함(French Digital Republic Law Expands Rights of Users and Regulators, 2016). - 온라인 전자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제공자는 사망 시 데이터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에게 알리고, 이용자가 데이터를 지정된 제삼자에게 전송할지를 선택할 수 있게 함. - 이러한 권리를 제한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모든 조항은 무효가 되며, 데이터 주체의 의사가 없는 경우 그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사망자의 모든 계정을 폐쇄할 권리가 있음.

국가	관련법 유무*	주요내용
스페인	△	- 스페인 DPA(Spanish Data Protection Act)는 사망한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으나, 개인이 디지털 유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Pastor, 2018)
독일	△	- 사후 개인정보 관리와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지 않았으나, 2018년 연방대법원은 사망한 소녀의 부모에게 보편적 승계 원칙을 들어, 페이스북 계정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이지영, 2018). 즉 법령은 없지만, 판례가 있음.
중국	O	- 2020년 5월 중국은 상속법을 개정하여, 시민들이 암호 화폐 및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을 상속할 수 있음(Kaaru, 2020).
일본	X	-

* O: 대체적으로 존재 △: 일부존재 X: 사실상 부존재

한편, 향후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인 ‘디지털 원주민 세대(digital native)’²⁾의 죽음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다뤄져야 할 문제이지만, 법률을 시행 중인 국가들도 비교적 최근에 법이 제정되어, 아직 적절한 판례들도 많지 않다. 사후 디지털 기록과 관련하여 여러 문제와 사건들이 생기고 법정 다툼이 일어나게 된다면, 더 많은 국가에서 필연적으로 관련 법률이 채택될 것이고, 더욱 정교한 규정이 생길 것이다.

WebFX Team(2014)은 2014년 현재 온라인 플랫폼인 페이스북이 그 당시 기준으로 성장세를 멈춘다면 2065년에는 사망자 계정이 생존자 계정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 그런데 사망자 계정의 존속은 고인을 떠올리고 추모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온라인에서 고인과의 예상치 못한 특별한 만남을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들은 플랫폼 계정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변화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래서 디지털 유산 협회(Digital

2)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한 세대를 뜻하는 말. 스마트폰과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원어민(Native speaker)처럼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세대라는 의미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두산백과, 검색 일자: 2021. 8.9.)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5753590&cid=40942&categoryId=31630>

Legacy Association)에서 발표한 2018년 조사 보고서에 보면 “만약 당신이 아끼는 사람이 죽는다면, 당신이 그들의 소셜 미디어 프로필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해를 거듭할수록 중요하다는 대답이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이렇게 늘어만 가는 소셜 미디어 상의 사망 계정에 대해 접근 기능을 제한하고 상태를 변경하거나 폐쇄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개개인의 특성 있는 개인 아카이브나 다름없는 고인의 계정에 접근할 수 없게 되거나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플랫폼들은 이러한 잠재적인 개인아카이브를 위한 도구와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기록과 기억을 미래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는 아키비스트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Acker & Brubaker, 2014).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을 최전선에서 마주하고 있는 플랫폼 회사의 경우 자체 규정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하나하나 챙겨보며 그것에 맞추어 자신의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남기는 디지털 기록의 지속성과 온전성을 확실히 보장받을 수가 없다(Kasket, 2019/2020).

구글(Google), 애플(Apple), 페이스북(Facebook)은 ‘휴면계정 관리자’ 또는 ‘Legacy Contact’ 라는 이름으로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각 기능은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생전의 고인이 본인의 죽고 난 뒤에 남겨지게 될 계정 및 기록물을 누구에게 관리하도록 할 것인지(상속), 또는 삭제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결정을 돕는다.

플랫폼마다 각 정책의 범위와 서비스의 차이점은 있으나, 공통점으로는 어떤 기업도 제삼자, 심지어 가족이라고 해도 아이디 및 비밀번호는 절대로 제공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고인의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유출 및 도용과 같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 때문에 일부 플랫폼의 경우, 고인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

도록 비교적 많은 권한을 가지는 ‘계정 관리자’를 설정하는 기능을 제공하여, 고인의 디지털 기록이 그냥 묻히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즉 구글에서는 ‘휴면계정 관리자’를 통해서 사자의 디지털 기록을 관리하는데, 이는 일정 기간 계정을 사용하지 않으면 특정 이용자에게 계정 데이터의 일부를 공유하거나 계정의 휴면 사실을 알리는 도구이다. 이를 활용하여 구글 계정 보유자는 생전에 작별 인사와 함께 이메일을 미리 작성하고 계정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명시하여 자신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개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휴면계정 관리자에서 사망한 후 계정을 삭제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구글 계정 고객센터, 2021).

페이스북은 2015년에 ‘기념 계정 관리(Legacy Contact)’를 도입하여, 고인이 된 이용자의 가족이나 친한 친구가 요청하는 경우 이용자의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설정하여 친구와 가족 등이 모여서 추억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했다. ‘기념 계정’의 또 다른 기능은 고인이 된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계정이 관리되기를 바라는 방식을 선택하고 기념 계정 관리자를 지정하여, 이용자의 사망 시 기념 계정을 관리하거나 영구적으로 삭제하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념 계정 관리자가 이러한 권한이 있다는 것은 반대로 기념 계정 관리자가 없다면 기념 계정은 어떠한 내용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직계 가족의 경우 고인이 된 이용자의 계정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도 다른 사람의 계정에 대한 로그인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페이스북 고객센터, 2021).

현재는 일부이지만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플랫폼의 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데, 대표적으로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을 양도하는 것을 상당히 꺼려왔던 애플도 최근 ‘유산 관리자(Legacy Contact)’라는 기능을 도입한 사례가 그 예라고 할 수 있다(Apple 지원 문의, 2021). 이는 최근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플랫폼을 포함한 다수의 플랫폼은 아직 계정 상속 기능

이 없는 경우가 많고, 제삼자를 통한 관리가 불가능한 계정은 휴면 계정으로 처리가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 처리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네이버(Naver)는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와 같은 계정정보를 유족의 요청이 있는 경우라도 유족에게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족 등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회원 탈퇴를 요청하는 경우 고인과의 관계를 확인한 후에 회원 탈퇴 처리하고 있다. 공개 블로그 등 계정에 로그인하지 않고서도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는 유가족의 편의 제공을 위해 유가족에게 가족증명서류, 동의서 등의 확인절차를 거친 후 백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 이상 이용되지 않는 서비스의 계정 정보 또는 이용정보는 별도 보관하여 안전하게 보호하거나 영구 삭제 처리된다(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2021).

다음(Daum)도 고인의 아이디에 대한 개인정보 및 데이터를 유족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가족이 사망자의 아이디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 해 신원확인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접수하여 사망자 아이디의 삭제 처리가 가능하다. 즉 사망자의 아이디, 비밀번호는 제공하지 않는다. 1년 이상 로그인하지 않은 계정은 휴면 계정으로 전환한다. 휴면 계정으로 전환된 후 별도로 4년 동안 보관하고 그 기간 내에 재사용 신청이 없으면 계정은 지체없이 파기된다(다음 고객센터, 2021).

3)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산업 현황

해외에서는 2010년 즈음부터 이용자 사후에 메시지를 보내주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동시에 사진, 동영상, 문서 자료 등의 기록물 및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돕고, 여러 온라인 계정의 아이디, 비밀번호 등도 보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늘어났다(〈표 3〉 참조). 고인은 생전에 이러한 자료 및 정보

들을 상속해줄 사람을 미리 설정할 수 있으며, 회사마다 다르지만, 고인의 유언과 사후 디지털 기록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지문 등록, 얼굴 인식, 이용자 인증 등)을 이용한다.

〈표 3〉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관련 서비스 사이트 목록

사이트 이름	개설연도	디지털 기록물	디지털 메시지	디지털 추모관
afternote	2013	○	○	
aftersteps	2010	○	○	
AfterVault	2016	○	○	
Bcelebrated	2009			○
Directive Communication Systems	2014	○		
Everplans	2013	○		
GhostMemo	2013		○	
GoneNotGone	2016		○	
Heart2Soul	2007			○
Journal of Life	2010			○
Knotify	2014	○		
Legacy	1999			○
Lexikin	2014	○		
LifePosts	2016			○
Meminto	2017	○	○	
myfarewellnote	2017		○	
MyGoodbyeMessage	2013		○	
MyMoriAm	2012	○		
mywishes	2012	○		
My Wonderful Life	2010	○	○	○
Remembered	2015			○
SafeBeyond	2014	○	○	
SecureSafe	2009	○		
Tributize	2017			○
YouMattered	2014			○
中华遗嘱库	2013	○		

*출처: (Nagy & Kiszl, 2020)의 <표2> 발췌 후 수정

이러한 서비스는 대부분 무료가 아니지만,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와 관련한 여러 사이트가 현재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재 한국에서는 이와 같은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나 사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앞으로 디지털 원주민들의 사망이 증가하게 되면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에 관한 관심은 필연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해서 기록학계 및 기록관리기관에서도 대비하고 도움을 주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3.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문제점

1) 법과 제도 및 산업의 문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에서는 사망자의 온라인 정보와 같은 디지털 기록과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법적 요건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고, 그 책임을 각 플랫폼의 약관에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다(김민호, 2016). 플랫폼은 법적 지침과 구속력 없이 고인의 디지털 기록에 관한 처리 방안을 이용약관에 명시하여 개별적으로 관련 지침을 수립하고 있고, 고인의 사후 디지털 기록은 그 데이터가 플랫폼에 저장된 이상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특히 이용약관에 그 권리와 관리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상속인이 권리를 주장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유인호, 2015).

플랫폼의 경우, 고인의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해 상속 또는 열람청구 등의 요구를 하는 상속인(유가족)과 지인은 원활한 자료 습득이 불가능하고, 플랫폼 측에서는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정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타 법률이나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할 위험성도 있기에 관련 서비스에 소극적이다(황용석, 유정석, 김용국, 2011). 이 때문에 플랫폼과 상속인

간의 갈등은 늘어나고 쉽게 해결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고인의 명확한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고인의 잊혀질 권리 또한 존중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의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플랫폼의 경우도 디지털 기록의 내용, 구조, 맥락을 보존하는 시스템이 부족하다. 페이스북을 예로 들면 어떠한 게시글에 대한 사진, 댓글, 태그 등 그 게시물이 작성된 배경과 다른 사람들과의 반응이 담긴 교류 등은 온전하게 저장이 불가능하다.

산업의 경우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리 서비스를 시행하는 회사들은 계속해서 사라지고 생겨나고를 반복하는 있는 상황이다. 또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역시 잘 보호되지 미지수이다. 그저 홈페이지에서 주장하는 문구만을 믿고 이용할 수밖에 없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게다가 대부분이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접근성과 이용가능성도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2) 개인 디지털 기록관리의 문제

첫 번째로 실물 존재 확인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개인 디지털 기록의 경우, 생전에 이용자가 본인의 디지털 기록이 저장된 플랫폼의 계정과 관리 방법을 명시해놓지 않는다면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남겨진 사람들이 그 존재를 모르는 경우 방치된 채로 남겨지게 된다. 디지털 세계에서든 이용자의 죽음을 즉각적으로 알 수 없는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서서히 잊히게 될 것이다. 중국에는 플랫폼의 환경 또는 운영정책 등에 의해서 삭제되거나, 해킹 등으로 인해서 고인이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악용되거나 개인적인 기록들이 유출될 위험도 있다.

두 번째로 장기 보존의 기술적 한계가 있다. 우리가 흔히 자료를 저

장하는 USB, 하드디스크 등의 수명은 무한하지 않다. 보관 상태 및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언제든지 자료가 훼손되거나 소실될 수 있다. 이는 기록의 무결성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리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플로피디스크, CD 등 과거의 저장장치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세 번째로, 외부 스토리지가나 사이트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다. 온라인을 통해 저장하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는 서비스 제공 업체의 장치를 통해 기록을 저장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보다는 안전하지만 보안 측면에서는 위험성도 있고, 클라우드 스토리지 역시 소실 및 서비스 종료의 위험성이 있다. 실제로 사진, 동영상 등 핸드폰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던 SKT의 클라우드베리, LG U+의 U+Box 등과 같은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2021년 종료된 바 있다. 웹 사이트 등에 있는 기록 역시 안전하지 않다. 실제로 예전에는 접속이 되었지만, 지금은 접속되지 않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이를 ‘죽은 링크(dead link)’라고 한다(Cook, 2018). 이는 웹 사이트가 폐쇄되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오늘날 웹 페이지는 바뀌거나 완전히 사라지기 전 평균 100일 동안 유지된다고 한다(Rumsey, 2016).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커뮤니티 사이트였던 싸이월드 폐쇄와 관련하여 많은 이들의 추억이 담긴 자료들이 소실될 위기에 놓이기도 하였다(김소정, 2021).

네 번째로 맥락 정보 보존의 어려움이 있다. 종이 기록의 경우 기록의 물리적 보존만으로도 기록의 내용과 더불어 종합적 맥락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증거성 및 신뢰성, 진본성이 보존된다(국가기록원, 2021). 그러나 디지털 기록은 실물로 존재하는 종이 기록과 달리 서식이나 내용 모두 컴퓨터 저장 공간 안에 존재한다. 서식과 내용에 모두 비트스트림이 사용되어, 문자코드와 뷰어, 그리고 뷰어를 구동할 수 있는 운영체제와 하드웨어가 없이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다(임진희, 2014). 게다가 서식과 내용을 분리할 수 없는 종이기록과 달리 전자기

록은 서식과 내용 그리고 디지털 컴포넌트 모두가 분리 가능한 상태로 존재한다. 즉 내용-맥락-구조가 분리되어 존재하므로, 기록물의 특성을 지키면서 관리하려면 이들 정보까지 다 고려하여야 한다. 디지털 기록의 맥락은 쉽게 파괴될 수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문제 및 소유권 설정의 어려움이 있다. 개인 디지털 기록의 경우 온라인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 있으므로 비록 사용자가 사망하여 고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인과 관계된 사람들의 저작권은 유효하다. 그러므로 향후 소송 등의 법적인 다툼을 우려한 플랫폼 기업들은 자료 제공에 소극적이다. 또한 고인이 생전에 개인 디지털 기록의 상속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경우 소유권 상속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생기게 된다. 게다가 개인 디지털 기록의 경우 고인이 생전에 특정한 조치, 예를 들면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나 스마트폰의 비밀번호, 웹 사이트나 SNS 등의 아이디, 비밀번호, 계정 관리 대리자 임명과 같은 계정 보안과 관련된 것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유서에 개인 디지털 기록에 관한 권리 양도 및 기록의 종류나 위치 등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남겨진 사람들은 고인 기록의 존재를 알 수 없거나 상속받는 데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4.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해결방안

Cox(2008)는 디지털 보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 개인 기록에 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미국 의회 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는 개인 사진 컬렉션 보관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이는 사람들이 기록 보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디지털 기록이 더 잘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기록관련 기관에서는 개인 디지털 아카이브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방법을 이해할 필

요가 있고, 이 지식을 일반 대중과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Severson, 2018).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 디지털 기록을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법과 플랫폼 정책, 기록관리 기관 등에서 개인 디지털 기록 관리 방안과 사후 관리 방안을 적절하게 만들고, 교육을 통해 개인들도 개별적 보존 및 활용 방법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법과 플랫폼 정비

(1) 법적 규정 마련

법적으로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을 고인의 유품으로 간주하여 고인이 원할 경우 유가족 또는 유언을 통해 생전에 지정해둔 상속자·대리자 또는 유가족이나 관계 있는 사람들에게 관리 권한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플랫폼의 약관 조항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유인호, 2015). 그리고 고인의 개인 디지털 기록과 관련하여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 제공 절차,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청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사후 디지털 기록의 상속과 관련된 법 또는 법 조항이 생긴다면 여러 플랫폼에 관련 약관을 넣도록 강제할 수 있으며, 이미 플랫폼에서 자체적으로 상속 또는 계정 대리자 임명 등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에 법적 효력을 지니게 하여 좀 더 확실하고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³⁾

플랫폼은 이러한 관리 권한 설정에 있어, 정보 주체인 고인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사후의 권리 부여는 엄격히 제한하고, 이러

3)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법(표2) 참조

한 관리 권한 설정을 고인이 생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이용자의 사이트에 가입 시 안내 등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러한 디지털 기록에 대한 관리 사항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황용석, 유정석, 김용국, 2011). 그리고 상속인들 대상으로 고인의 개인 디지털 기록과 관련한 정보 제공 절차, 상속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 청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두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의 접근권과 관리권에 대해, 이를 반대하는 고인의 생전의사가 존재했는지, 관리방안을 지정했는지를 판단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오히려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정정보 및 접속정보, 비공개정보의 경우 이용자가 생전에 청산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접근권을 부정하는 등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유인호, 2015).

(2) 플랫폼 정책의 필요성

플랫폼의 경우 마땅한 법적 요건이 없는 현재, 일부는 이용자에게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와 관리하는 방법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개인 기록의 가치를 지속시키는 보존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은 없다. 이는 플랫폼과 이용자의 계약(약관)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고인의 유언 및 유족의 요구를 일부 인정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통한 이용자의 선택권이 존중되어야 한다(김민호, 2016).

이를 위해서 플랫폼은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한 관리방안을 계획하고, 그 기록의 상속자가 디지털 기록을 상속받는 프로세스를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플랫폼은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을 취급할 때 통지의 의무, 공개 의무, 지원 의무 및 기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于灵歌, 2019).

또한 플랫폼 측에서는 가입 시에 이용자 사망 또는 유고 시 개인 디지털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 약관을 통해 확실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김원석, 2011). 그리고 개인의 기록과 관련하여 사후 발생하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의 사후 기록을 확실하게 관리하는 방법 등의 의사를 남길 수 있도록 가입 시에 사후 또는 개인의 유고 시 계정 관리 대리자를 선택하거나 계정 삭제 등 원하는 방식을 미리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요청처럼 한 번씩 본인의 선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알림을 보내는 서비스를 시행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식을 실시한다면 기업은 고인과 남겨진 사람 양측의 의사를 존중하고 요구 사항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용자도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으므로, 사후 고인의 의사가 더 잘 존중되고 남은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던 구글, 애플, 페이스북에서는 고인의 계정에 있는 기록을 제공하는 기능을 마련하거나 기념 계정 관리자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부 기록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망자의 ‘잊혀질 권리’의 실현에도 일부 이바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여기에 부가적으로 디지털 기록의 특성에 걸맞게 내용, 구조, 맥락이 파괴되지 않게 잘 보존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NS와 같은 플랫폼은 서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하게 맥락이 변한다. 이에 따라 단순히 고인이 적었던 텍스트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거나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러므로 고인이 글을 썼던 플랫폼의 구조(테이블), 해시태그 및 댓글, 공감(좋아요) 및 관련 링크 등을 포함해 기록의 맥락을 잘 알 수 있도록 보존하여 데이터를 보존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새로운 수집 방법은 아카이브 및 사후 디지털 기록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다(Acker & Brubaker, 2014). 다만 이러면 고인이나 고인의 기록과 관련된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권리까지 침해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 향후 플랫폼이 개인 아카이브의 공간으로서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과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다수의 이용자가 공감하고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어져야만 법률이 새로 마련되거나 플랫폼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로서는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한 문제는 생전에 개인이 본인 기록과 그 관리에 대한 입장을 확실하게 ‘교통정리’를 해놓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법률은 플랫폼이 개인의 사후 기록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규정을 만드는 데 근거와 보호가 됨과 동시에, 이를 강제할 수 있다. 그리고 플랫폼은 법률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약관 등을 통한 규약을 만들어서, 이용자가 사전에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 및 처리방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면, 이용자가 사망한 이후에 생길 디지털 기록 상속 등의 문제에서 좀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2) 기록관리기관의 역할

기록관리기관과 같은 기억기관은 사람들에게 기록에 대한 가치를 알림과 동시에 사람들과 더 가까워져야 할 필요가 있다. 개인 디지털 기록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만들거나 획득하는 기록이기 때문에 이것을 관리하는 것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이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를 잘 활용하도록 콘텐츠나 가이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된다면 기관은 학생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문화 확산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기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더 폭넓게 알릴 수 있을 것이다(이혜원, 이해영, 2015).

(1) 교육

일반인들에게 가장 쉽게 다가가고 알릴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개인은 전문가로부터 전략과 기술을 배울 수 있고 동시에 전문가는 개인으로부터 다양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Gunn, 2018).

개인 디지털 기록관리와 관련된 교육프로그램을 통하여 개인 디지털 기록의 중요성과 관리 방법들을 설명 및 제안하고 가이드나 지침 등을 제시하여 주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육프로그램 및 지침서는 연령대에 따라서 주제에 대한 비중과 내용을 달리하여 만들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비교적 교육할 기회가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방안을 제안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사후 디지털 기록은 학생들에게는 다루기에 무거운 주제이므로, 직접적으로 죽음과 관련된 것보다는 온라인에 남겨진 디지털 흔적과 온라인 환경에서 공유된 디지털 기록의 가치와 지속성에 대해 이해하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많은 학생이 소통의 창구로 사용하는 SNS를 예로 들어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기록, 그 기록을 가까운 미래에도 접속할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이다. 학생들과 플랫폼의 서비스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계정 이용자가 사망하게 되면 계정을 어떻게 폐쇄할지, 그 안에 있는 기록들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의문점을 제시하고 현실에서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해답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한다(Dawkins, 2020). 학생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많은 사이트가 사후 디지털 기록과 관련된 지침이 거의 없거나 전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SNS 페이지는 그대로 남겨질 수도 있으나, 반대로 악용되거나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언젠가는 남겨진 디지털 기록을 돌보아 주는 신뢰 가능한 사람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

조한다(Maxwell, 2020).

교육과정에서 교육자는 학생들에게 암호와 같은 온라인 계정정보와 노트북 등 장치의 비밀번호와 관련해 학생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본인의 개인 디지털 기록 및 사후 디지털 기록까지 폭넓게 생각할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생산한 디지털 기록의 기록학적 가치와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

(2) 디지털화 장비 지원

다음으로는 기관에서 아날로그 자료들을 디지털화해주는 기기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이다(Seagraves, 2020). 기존에 생산되었던 아날로그 자료는 대표적으로 일기, 사진 등이 있고 오프라인 디지털 자료인 비디오테이프(VHS) 등이 있다. 기록관리기관이나 도서관 등의 기억기관은 전문적인 스캐너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개인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자료의 수명을 늘려 장기적으로 보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인터넷이나 전화로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적절한 교육을 통해 사용법을 숙지시킨 후에 무료 또는 유료로 사용하도록 도울 수 있다.

이러한 장비는 개인 기록관리 교육과 연계시켜서 실습을 진행한다면 더 큰 시너지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경우, 수업 내용에 아날로그 기록물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넣고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한 후에 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입력 작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스캐너 외에도 여러 가지 장비를 지원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털사시티 카운티 도서관(Tulsa City County Library)에서는 스캐너, VHS·VHS-C 변환기, DV·미니DV 변환기, 레코

드 변환기, 오디오 카세트 변환기, DVD·BluRay 복사기, 8mm·Super8 필름 릴 컨버터, 3.5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의 디지털화 장비를 제공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제공된 장비를 이용하여 DC공공 도서관(DC Public Library)에서는 기억 연구실(Memory Lab)이라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디오를 디지털화하고 사진과 문서를 스캔하는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 및 교육을 통해 개인 디지털 기록의 장기 보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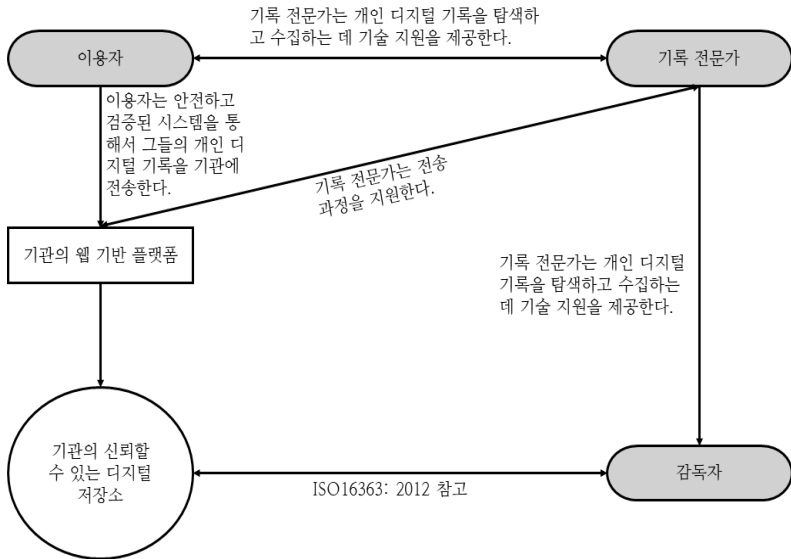
(3) 웹 기반 보존 서비스

다음으로는 기록관리기관에서 직접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를 돕는 플랫폼이 되는 것으로 앞서 ‘산업’ 부분에서 설명했던 개인 사후 디지털 서비스 사이트(홈페이지)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기록관리기관은 사업적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는 공공기관의 제도적 시스템이고, 이들 기관의 존립은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서 그 지위와 지속성이 보장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자들은 안심하고 온라인으로 디지털 기록을 보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까운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지 않거나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게 된다.

이 서비스를 통해 기관은 가장 중요한 대상인 이용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아카이브가 되며, 이용자의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을 오랫동안 온전하게 보존할 책임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이용자의 디지털 기록이 손상되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장치가 작동하고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지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감사·감독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저장소에 대한 감사 및 인증(Audit and Certification

of Trustworthy Digital Repositories)’에 대해 다루는 ISO 16363의 표준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Nagy & Kiszl, 2020). 앞선 내용을 정리하여 만든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기관의 웹 기반 보존 서비스 모델은 <그림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그림 1> 개인 사후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기관 보존서비스 모델



* 출처: Nagy & Kiszl (2020) 수정

3) 개인의 본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리방안

개인은 본인의 기록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 것인지 또는 파기할 것인지 등의 관리 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과 관련된 법률이나 사회적 합의는 마땅히 없으므로, 각 개인은 본인 자료의 다운로드 등의 별도 행동을 취하고, 계정이나 기록

물 등의 소유권을 지정해주는 등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1) 온라인 디지털 기록

온라인 디지털 기록은 대표적으로 SNS나 웹사이트 등이 있다. 이들은 이용자가 떠난 후에 친구와 가족 등이 방문할 수 있는 훌륭한 아카이브가 될 수 있다. 이는 고인의 디지털 기록을 보존하고, 고인을 기억하는 방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플랫폼에 따라서는 이러한 보존이 허용되는 경우, 혹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때로는 고인이 떠나고 남겨진 사람들이 플랫폼 측에 연락하여 여러 가지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본인이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졌는지 사후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에 관해서는 각 계정의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참고할 필요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다른 이들과의 소통이 어우러져 있는 맥락 있는 상태 그 대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리자’를 임명하거나, 계정을 누군가가 상속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 이용자가 사망하면 기념계정으로 전환되는데, 기존에 업로드 하였던 사진이나 글, 댓글 등이 그대로 남아 있는 채로 보존되어 고인의 디지털 아카이브가 만들어지게 된다. 그리고 기존에 친구였던 사람은 고인의 타임라인에 와서 글과 메시지를 남길 수 있기에 기념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를 관리할 주체가 없다면 고인에 대한 추모와는 관계없는 글들을 관리할 수 없어 방치되고, 친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접근이 불가하여 남겨진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기념계정 대리자’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 아카이브이자 기념관의 일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관리자를 임명하면 더 많은 사람이 고인을 기억할 수 있

도록 도울 수 있다. ‘대리자’를 지정할 시에는 어떠한 권한을 양도할지를 미리 정할 수 있으므로 원치 않는 기록들은 양도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대리자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은 아직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2) 계정정보와 유언장

한편 오프라인 디지털 기록으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장치의 내부에 저장된 기록들이 있다. 이는 서버에 저장된 온라인 디지털 기록과 달리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좀 더 직접적인 기록이다. 따라서 오프라인 디지털 기록의 경우, 비밀번호 등만 남겨진다면, 생산, 분류, 폐기까지 완전한 권한을 가지고 처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큰 제약 없이 상속 범위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보안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당연히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필요하고, 스마트폰과 노트북 등의 디지털 기기는 쉽고 낮은 가격으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보안 설정이 매우 쉬워졌다.

The Digital Legacy Association(2018) 연구에 의하면 응답자들의 85% 정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대리자를 임명할 계획을 세워본 적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자 중 단 39%만이 종이로 된 유서를 작성해보았다고 하였고, ‘소셜 미디어 유서’를 작성해봤다고 답한 사람은 고작 5%에 불과했다.

이는 유족 등 남겨진 사람들이 중요한 디지털 기록 일부에 접근할 수 없도록도 하며, 디지털 기록 접근 권한을 위한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용자는 생전에 보안을 관리할 수 있는 대리자를 지정하거나 접근 제한 또는 완전한 폐쇄를 결정해둘 필요가 있다.

꼭 물려주고 싶은 것, 잊지 말아줬으면 하는 것, 금전적인 것 등만 남

기거나 상속할 수 있다. 그 외의 것은 삭제 및 열람되지 않도록 조치하거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온라인 및 오프라인 계정정보와 이의 활용 및 관리 방식을 알리는 암호 정보 표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표 4>는 디지털 계정 관련 유언장의 예시이다.

〈표 4〉 디지털 계정 관련 유언장

홍길동을 위한 디지털 암호 정보				
1. 온라인 디지털 계정 정보				
온라인 계정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주소	원하는 계정 관리방식 (ex:상속, 폐쇄, 기념계정)	계정의 파일 사본 다운로드 여부	계정을 관리할 대리자
페이스북	ID: DarkRed PW: 12345 DarkRed@ naver.com	기념계정	있음 (2022.03.23. 기준)	어머니
구글	공개하지 않음	폐쇄	있음 (2022.03.23. 기준)	
2. 오프라인 디지털 계정정보				
매체 종류	비밀번호	원하는 관리방식	계정의 파일 다운로드 여부	매체 상속 대상자
스마트폰	공개하지 않음	파기	사진, 동영상 등 온라인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 백업	
컴퓨터	1234	로컬디스크 D의 00폴더 상속, 00폴더 파기	사진, 동영상 등 외장 하드디스크 및 온라인 클라우드(구글 드라이브) 백업	어머니
<p>나 홍길동이 죽으면 내 개인 디지털 기록은 위와 같이 관리해 주기 바랍니다. 2022. 4. 20.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 0번지 유언자 홍길동 (인)</p>				

※ 양식 인쇄 후 직접 서명해야 효력 있음

*출처: Digital Legacy Association 홈페이지의 Social Media Will 참고·보완

표의 작성 시에는 먼저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사이트의 이름을 입력한 뒤 계정정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다만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거나 폐쇄를 원하는 경우는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계정 관리 방식을 입력한다. 상속은 있는 그대로 상속하겠다는 의미이고, 기념계정은 페이스북과 같이 고인을 대상으로 한 계정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것이고, 폐쇄는 계정이 더 이상 온라인에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표명이 된다. 계정의 파일 사본 다운로드 여부를 통해서 남겨진 사람들에게 폐쇄하여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리거나 향후 상속된 계정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계정의 사본을 다운로드 해놓을 것을 부탁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계정을 관리할 대리자를 명확하게 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도록 의사를 피력할 수 있다.

오프라인 디지털 기록도 어떠한 매체에 저장되어 있는지 또 비밀번호가 걸려있다면 그 비밀번호 등을 알려줘야 대상을 쉽게 찾고 조치를 할 수 있다. 실질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기록의 공개·비공개 또는 삭제 등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생각들을 몇몇 사람에게 전달하여 자료의 존재를 인지시켜 필요시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인이 남긴 메시지가 전무하다면 남겨진 사람들 및 고인의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플랫폼 모두 고인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들이 잘못된 추측을 한다면 고인이 바라던 방식으로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 『민법』 제1060~1070조에서는 유언을 5가지 방식으로 정하고 있는데, 워드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통해 작성한 유언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혼자서 가장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자필증서유언으로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민법」에서 정한 규칙을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표 5>와 같은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표 5〉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법

내용	비고
유언장 전문(全文)을 직접 써야(自書) 함.	타자기, 워드 X
유언장의 작성일자를 직접 써야 함.	연·월·일까지 필수
주소와 성명을 직접 써야 함.	가명도 가능
유언장에 유언자의 인장 또는 도장으로 날인(捺印)해야 함.	날인은 무인(拇印)에 의한 경우에도 유효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 자필증서유언

온라인상에 남겨진 디지털 발자국들이 애도에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 디지털 발자국을 계속 남겨두어야 할지에 대해 의문을 품으면서 불편한 감정을 느낀다고 한다. 이 현상은 ‘대처의 역설(coping paradox)’이라고 하는데, 사후에도 계속 남아 보존되는 페이스북 프로필과 같은 사후 디지털 기록은 평소에 페이스북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위안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고문과도 같은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다(Kasket, 2019/2020c). 이렇게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 사후 관리 또는 접근 권한을 주는 것만으로도 남겨진 사람들에게 선택할 가능성을 주는 기회도 되고, 고인의 계정이 좀 더 온전하게 보존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자신이 바라는 바를 밝히지 않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대부분 플랫폼은 이용자의 사망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조치를 하게 된다. 즉 남겨진 사람들이 고인의 계정을 관리해주지 않는다면, 몇몇 플랫폼은 일정 기간 이용이 없으면 계정을 폐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계정에서는 온라인상에서 계속 존재하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이러한 주인 없는 ‘유령 계정’은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최용준, 2018). 소셜네트워크 플랫

폼의 회사가 해킹당해서 많은 사람의 사용자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렇게 유출된 계정 중에는 주인 없는 계정들이 포함되어 있고, 유출된 채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더더욱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이 적절하게 잘 관리되기를 원한다면 아이디, 비밀번호 등의 계정정보를 알리는 게 가장 확실하면서 간편하고 또 안전한 방법이다. 유료로 암호를 관리해주는 사이트들도 있으니 참고하는 것도 좋다.

(3)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 서비스 사이트 이용

이 방법은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를 민간 회사들을 통해 대행하는 것이다. 앞의 <표 3>에서 언급했던 업체들이 그것으로, 다만 이러한 사이트들은 대부분 유료이고 언제 사이트가 폐쇄될지 알 수 없으며, 제대로 전달될 것이라는 보장도 할 수 없다. 국적 관계없이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없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선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민간 서비스 사이트들이 개인기록을 쉽게 버리거나 폐기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삶을 다루는 관련 서비스가 쉽게 열리고 닫히지 않게 하는 지속가능한 장치도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5. 결론

인터넷 환경의 발전 및 디지털 기기의 보급으로, 연령대에 상관없이 과거에 비해 개인기록들이 손쉽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인적이고 일상적인 기록의 양이 많아졌다. 하지만 실물이 있는 아날로그 기록과는 달리, 이러한 개인기록들은 이용자 사후에 관리되

지 못하고 방치되거나, 소유권 역시 쉽게 정해지지 않아 상속되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개인에게는 소중한 기록이자, 당시 사회상을 알기 위한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일상 기록들이 쉽게 소실되고 있다. 사람들은 개인 디지털 기록 보존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마땅한 방법을 알지 못해 소극적인 방임(benign neglect)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맞춰 개인 디지털 기록, 그리고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관심을 기울이고 기록관리를 돕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과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알아보고,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과 관련한 플랫폼의 정책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과 산업 분야의 관련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았다. 또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 개인의 기록관리 측면에 대한 문제점도 알아보았다.

이러한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먼저 법과 관련하여서는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을 고인의 유품으로 간주하여 고인이 원한다면 유언을 통해 생전에 지정해둔 상속자나 대리자, 또는 유가족과 같은 관계있는 사람들에게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에 대한 관리 권한이 이전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요건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후 디지털 기록의 상속과 관련된 법 또는 법 조항이 생긴다면 여러 플랫폼의 서비스와 약관에 법적 효력을 가지게 하여 좀 더 확실하고 보장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게 된다. 법률을 통해서 플랫폼이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규정을 강제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유족의 접근권과 관고려 없이 광범위하게 인정한다면, 오히려 고인의 프라이버시와 잊혀질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용자가 생전에 청산 방법을 지정하지 않은 이상 일반적인 접근권은 불허하는 등 그 범위는 최소한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플랫폼의 경우, 생전의 고인이 본인 기록의 관리에 대한 방안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존중되도록, 플랫폼은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 및 처리방안에 관한 프로세스를 세우고, 가입 시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계획을 세우도록 돕는 서비스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산업의 경우에는 사업적 논리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게, 그 지위와 지속성이 보장된 기억기관(기록관이나 도서관)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셋째,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 관련하여 어떤 기록을 누구에게 남길 것인지 또는 파기할 것인지 등의 관리 방법을 각 개인이 미리 정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즉 ‘계정정보가 포함된 유언장’의 작성을 통해 계정을 관리할 대리자를 명확하게 하여 본인이 원하는 사람이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현재’로서는 개인이 스스로 개인 디지털 기록과 본인 사후 디지털 기록의 관리와 처리에 대해 고려하고 대비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직은 개인의 사후에, 생전에 운영하던 SNS나 노트북 등 개인의 기기에 남겨진 디지털 기록을 의미 있는 일상 기록으로 보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개인의 소소한 일상을 후손들이 확인할 방법은 법적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나 한 시대를 산 개인의 삶의 흔적이 개인 혼자만의 기록으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남기기를 원하는 기록은 안전한 방법으로 오랜 시간 주위의 사람들과 미래의 후손들에게 공유되고 활용된다면, 그 기록은 한 가족 역사의 일부이자 사회사의 일부가 될 것이고, 후일 이는 과거의 다양한 사회상과 개인의 삶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SNS나 개인의 PC나 노트북 등에 남은 기록들이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라지지는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은 역사 속에서 주목받지 못했으나 이제 개개인의 개성과 삶이 중요하게 생각되는 시대에, 다양한 개인 디지털 기록은 사회에서 의미있는 기록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기록전문가들은 다양한 개인 기록들이 관리되고 보존되도록 지속가능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데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가 그러한 제도를 만드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

라며, 실제 제도적 장치들이 이른 시일 안에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논문에서는 고인이 남겨놓고 간 디지털 기록물들을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다루지 못하였기에, 개인 사후 디지털 기록관리의 지속가능성 부분에 대한 제안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김경미 (2013). 개인의 사후 디지털 유산 관리를 위한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김민호 (2016). 사자(死者)의 온라인 디지털 정보에 대한 법적 쟁점. 토지공법연구, 76, 199-217. 재인용: 김세준 (2017). 디지털유산에 대한 상속인의 정보 청구권. 가족법연구, 31(3), 319-344.
- 김슬기 (2015). 디지털 개인기록 보존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4), 77-98,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4.077>
- 김원석 (2011).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후(死後) 디지털 유산 처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 곽건홍 (2011). 일상 아카이브(Archives of everyday life)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3-33, <https://doi.org/10.20923/kjas.2011.29.003>
- 신동평. (2017). 개인정보보호와 디지털 유산 상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이혜원, 이해영 (2015). 기록관의 견학 프로그램.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5(3), 219-245, <https://doi.org/10.14404/JKSARM.2015.15.3.219>
- 임진희 (2014). 전자기록관리론. 도서출판 선인.
- 최유리, 임진희 (2016). 개인기록 관리 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47(1), 5-49, <https://doi.org/10.20923/kjas.2016.47.005>
- 통계청 (2020). 출생, 사망통계 잠정 결과.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1). 2020 인터넷이용 실태조사 요약보고서.
- 황용석, 유정석, 김용국(2011) 사망자의 디지털 유산(개인정보, 계정, 게시물 등) 처리방안 연구. 방송통신위원회, 8-21.

- Acker, A., & Brubaker, J. R. (2014). Death, memorialization, and social media: A platform perspective for personal archives. *Archivaria*, 1-23.
- Cook, C. (2018). Archiving web content. *The Complete Guide to Personal Digital Archiving*, 33-55.
- Cox, R, J. (2008). Personal archives and a new archival calling: readings, reflections and ruminations. Litwin Books, LLC. 재인용: Gunn, C. (2018). Putting personal digital archives in context. *The Complete Guide to Personal Digital Archiving*, xi-xxii
- Dawkins, A. (2020). Digital Citizenship, Digital Legacy, and School Librarians. *Library Technology Reports*, 56(5), 17-21, <https://doi.org/10.5860/ltr.56n5>
- Gunn, C. (2018). Putting personal digital archives in context. *The Complete Guide to Personal Digital Archiving*, xi-xxii
- ISO 16363 : 2012 Space data and information transfer systems — Audit and certification of trustworthy digital repositories.
- Kasket, E. (2019). All the Ghosts in the Machine: The Digital Afterlife of your Personal Data. 김성환 옮김(2020). *디지털 시대의 사후 세계*. 서울: (주)로크미디어.
- Marshall, C. C. (2008). Rethinking personal digital archiving, Part 1: Four challenges from the field. *D-Lib Magazine*, 14(3), 2, DOI:10.1045/march2008-marshall-pt1
- Maxwell, L. (2020). Digital Literacy and Digital Legacy. *Library Technology Reports*, 56(5), 7-11. <https://doi.org/10.5860/ltr.56n5>
- Nagy, A., & Kiszl, P. (2020). Personal digital legacy preservation by libraries. *Journal of Librarianship and Information Science*, <https://doi.org/10.1177/0961000620948574>
- Seagraves, K. (2020). Digitization and Personal Digital Archiving. *Library Technology Reports*, 56(5), 22-28. <https://doi.org/10.5860/ltr.56n5>
- Severson, S. (2018). Archiving digital photographs. *The Complete Guide to Personal Digital Archiving*, 3-18.
- Sinn, D., Kim, S., & Syn, S. Y. (2017). Personal digital archiving: influencing factors and challenges to practices. *Library Hi Tech*, 35(2), 222-239. <https://doi.org/10.1108/LHT-09-2016-0103>
- Rumsey, A. S. (2016). *When we are no more: How digital memory is shaping our future*. Bloomsbury Publishing USA. 광성혜 옮김 (2016). *기억이 사라지는 시대*. 서울: 유노북스.
- Waagstein, A. (2014). An exploratory study of digital legacy among death aware people. *Thanatos*, 3(1), 46-67.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타법개정
민법.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유인호 (2015). 디지털 시대의 상속권과 잊혀질 권리. 국제법무, 7(1), 187-228.

Access to Digital Assets of Decedents (2021).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Data Protection Act 2018. <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18/12/part/1/enacted>

French Digital Republic Law Expands Rights of Users and Regulators [Law No.
2016-321 of 7 October 2016]

GDPR,EU (2018). What is GDPR, the EU's new data protection law?

Hockley, V et al. (2015). Digital assets: disposal, rights and succession in Canada.
Retrieved January 5, 2022, from [https://ca.practicallaw.thomsonreuters.com/2-600-020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 p=1#co_anchor_a643934](https://ca.practicallaw.thomsonreuters.com/2-600-0205?transitionType=Default&contextData=(sc,Default)&firstPage=true&bhc p=1#co_anchor_a643934)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2016). Information about the deceased.

Revised Uniform Fiduciary Access To Digital Assets Act (2015). 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 Laws.

Uniform Access To Digital Assets By Fiduciaries Act (2016). Uniform Law Conference
Of Canada.

個人情報の保護に関する法律. [平成十五年法律第五十七号, 令和二年法律第四十四
号による改正]

〈웹사이트 및 언론기사〉

구글 계정 고객센터 (2021). 휴면계정 관리자 정보. 검색일자: 2021. 7. 20. <https://myaccount.google.com/inactive>

국가기록원 (2021). 전자기록물은 왜 종이 기록물과 다른가. 검색일자: 2021.10.19.
<https://www.archives.go.kr/next/manager/electronicConcept.do>

김소정 (2021). 추억의 싸이월드, 오늘 오후 4시20분 부활. 조선일보. 검색일자:
2021.11 .27.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1/08/02/BP5AJMYIMRDGBM25L2V4SZIFZE/

네이버 프라이버시 센터. (2021). 디지털 유산 관련 정책. 검색일자: 2022. 1. 5.
https://privacy.naver.com/policy_and_law/digital_heritage?menu=policy_service_manage_digital_heritage

- 다음 고객센터 (2021). 내 정보 관리. 검색일자: 2022. 1. 5. <https://cs.daum.net/faq/59/5218.html?faqId=4107>
- 애플 (2021). 사망한 가족 구성원의 Apple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 방법. 검색일자: 2021.12.29. <https://support.apple.com/ko-kr/HT208510>
- 오동현 (2017). [게임 '사행성' 논란⑤] 사고뭉치 '아이템 개인간 거래'...게임사, 수익성 포기 못해. 뉴시스. 검색일자: 2021.11. 27. https://newsis.com/view/?id=NISX20171130_0000163631
- 이지영 (2018). 사망자 페이스북은 디지털 유산...독일 대법원 "유족에 공개해야". 중앙일보. 검색일자: 2022. 1. 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97723#home>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1). 유언. 검색일자: 2021. 8. 29.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34&ccfNo=1&cciNo=1&cnpClsNo=1>
- 최용준 (2018). 죽은 친구 SNS가 음란광고 둔갑...“해킹·도용 등 무차별적”. 파이낸셜뉴스. 검색일자: 2022. 3. 27. <https://www.fnnews.com/news/201810011024134988>
- 페이스북 고객센터 (2021). 기념 계정 관리자란 무엇이며 내 Facebook 계정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검색일자: 2021. 7. 21 <https://www.facebook.com/help/1568013990080948>
- Brookes, T. (2021). How to Add a Legacy Contact to Your Apple ID (and Why). How-To Geek, Retrieved December 16, 2021, from <https://www.howtogeek.com/768020/how-to-add-a-legacy-contact-to-your-apple-id-and-why/>
- DC Public Library (2021). The Memory Lab. Retrieved August 16, 2021, from <https://www.dclibrary.org/labs/memorylab#reservations>
- Digital Legacy Association (2018). Digital Death Report 2018. Retrieved August 27, 2021, from <https://digitallegacyassociation.org/wp-content/uploads/2019/11/Digital-Death-Survey-2018-The-Digital-Legacy-Association-1.pdf>
- Digital Legacy Association (2021). Social Media Will. Retrieved August 27, 2021, from <https://digitallegacyassociation.org/#explaining-digital-legacy>
- Kaaru, S. (2020). China's new law allows digital currencies inheritance. COINGEEK. Retrieved January 5, 2022, from <https://coingeek.com/chinas-new-law-allows-digital-currencies-inheritance/>
- Pastor, N. (2018). Highlights of the new Spanish Data Protection Act
- Tulsa City County Library (2021). Digitization Equipment in the Digital Literacy Lab. Retrieved August 16, 2021, from <https://www.tulsalibrary.org/programs-and-services/aep-foundation-digital-literacy-lab/digitization-equipment-in-the-digital-literacy-lab>

- UNESCO. (2003). Charter on the Preservation of the Digital Heritage.
Retrieved August 11, 2021, from <https://unesdoc.unesco.org/ark:/48223/pf0000179529>
- WebFX (2014). What Happens to Your Online Presence When You Die? Retrieved September 11, 2021, from <https://www.webfx.com/blog/internet/happens-online-presence-die-infographic/>
- 于灵歌(2019). 网络时代, 如何处理自己的数字遗产?. 工人日报. 검색일자: 2021. 11. 23. http://www.xinhuanet.com/fortune/2019-11/19/c_1125246814.htm